

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!

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?

-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**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.**
※ 「중위소득」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(4인가구기준 4,222,533원)
-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,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**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**

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?

4인가구기준	생계급여수급자 (중위소득28%이하)	의료급여수급자 (중위소득40%이하)	주거급여수급자 (중위소득43%이하)	교육급여수급자 (중위소득50%이하)
소득인정액	1,182,309	1,689,013	1,815,689	2,111,267

- 신청가구가 **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** 해당 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소득인정액 :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,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※부양의무자 범위 :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,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: 4인가구 기준 484.7만원 이상

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-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,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 - 신청장소 : 주소지 주민센터
 - 집중신청기간 : 2015. 6. 1 ~ 6. 12
 - 구비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동주민센터 비치)
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사용대차확인서, 전대차계약서 등), 통장사본 등
- ※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4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?

- 생계급여 : 중위소득 28%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.
- 의료급여 : 중위소득 40%이내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 : 중위소득 43%이내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임대차계약관계,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, 주거형태,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
 -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환산액)를 지원합니다. ※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

< 서울지역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>

(단위:만원/월)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1급지(서울)	19	22	26	30	31	36

- 자가га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. ※ 경보수 350만원(3년주기), 중보수 650만원(5년주기), 대보수 950만원(7년주기)
- 교육급여 : 중위소득50%이내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부교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5 맞춤형급여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?

-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34만 가구에서 210만가구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평균현금급여도 평균42.3만원에서 평균 47.2만원 증가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.
- 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다른 조건을 동일하나 제도 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이행기보전액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줄어든 금액을 보전해드립니다.

※ 이행기보전액이란?

7.1 이전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개편전과 개편후 모든 조건은 동일하나 제도개편으로 현금급여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만큼 지원하는 금액

- 수급자의 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 15.06월급여와 15.07월 급여를 비교하여 감소한 금액을 보전하되, 최초 결정된 보전액은 고정되며 가구단위로 지급
(개인별 분리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면 보전액은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않음)